# 청 원 심 의 회 운 영 규 정

# 목 차

제1장 총칙 1	l
제1조 목적]	Ĺ
제2조 정의	L
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]	L
제2장 청원심의회 구성 등1	L
제4조 청원심의 원칙]	L
제5조 심의사항]	L
제6조 심의회 구성2	2
제7조 위원장의 직무2	2
제8조 위원의 임기2	2
제9조 외부위원의 해촉2	2
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	2
제3장 청원심의회 운영	3
제11조 심의회 개최 등	3
제12조 심의회 운영 3	3
제13조 자료의 제출 등	1
제14조 비밀준수의 의무	1
제15조 수당	1
제16조 기타사항	1
브 치	1

### 청원심의회 운영규정

2023.06.08.제정(규정 제1428호)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「청원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한국교통 안전공단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주관부서"란 「직제시행세칙」(이하 "세칙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 업무를 관리·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2. "처리부서"란 「청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 다만,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.
- 제3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 청원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의 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제2장 청워싞의회 구성 등

제4조(청원심의 원칙)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.

제5조(심의사항)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
- 2.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수 있다.
- 1. 청원인의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
- 2. 해당 청원을 처리할 때 공단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
- 3.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
- 4.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

- 5.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공단의 업무에 관해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
- 6. 피해구제, 위법·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, 법령 제정·개정·폐지, 공공제도·시설의 운영 등 청원 관련사항이 아닌 단순 진정, 건의 또는 불만사항 표출 등 일반민원에 해당하는 경우
-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청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의 협조 및 처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청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때 그 사실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.
- 제6조(심의회 구성)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, 내부위원 1명,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를 관할하는 본부의 장으로 한다.
  - ③ 내부위원은 공단 부서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.
  - ④ 외부위원은 법률전문가 또는 공단 소관 업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.
  -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 이 경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.
- 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8조(위원의 임기) ①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  -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  - ③ 이사장은 제9조에 따라 외부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외부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하며,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9조(외부위원의 해촉) 이사장은 심의회의 위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 - 1.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  - 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  - 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  - 4.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
  - 5. 제14조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- 6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
- 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
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)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- 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
- 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- ② 심의회의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.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#### 제3장 청워싞의회 운영

- 제11조(심의회 개최) ① 심의회의 회의(이하 "회의"라 한다)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거나 해당 청원이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- 제12조(심의회 운영) 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  - ②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(영상회의를 포함한다)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.
  - 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  - 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  - 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  - 4.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

- ③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④ 회의 종료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,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13조(자료의 제출 등)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적극협조하여야 한다.
  - 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회의에 심의대상 안건 담당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.
  - ④ 제2항에 따라 심의대상 안건 담당직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처리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, 처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한다.
- 제14조(비밀준수의 의무)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,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.
  - 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,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책임을 진다.
- 제15조(수당)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「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16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# 부 칙 <규정 제1428호, 2023.06.08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접수된 청원도 이 규정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본다.

#### ■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[별지 제1호 서식]

### 서 약 서

소 속:

직 위:

성 명:

위 본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청원심의회 위원으로서 청원심의에 임 하여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.

- 1. 심의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
- 2. 심의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 · 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3. 심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
- 4. 심의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,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
- 5. 심의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
- 6. 심의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·향응·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·알선 행위 금지
- 7. 기타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규지

년 월 일

위 서약자 (인)

■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[별지 제2호 서식](제11조 관련)

#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

처리부서		
	청원명	청원요지
청원사항	청원인	접수번호 20230000-0000000-0000
요구사유		
검토의견	(청원 사항에 대한 최	러리부서의 검토의견 작성)

「한국교통안전공단 청원심의회 운영규정」 제00조 제0항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 개최를 요구합니다

년 월 일

처리부서의 장

(서명 또는 인)

■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[별지 제3호 서식](제12조제1항 관련)

#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

안건						
접수번호	20230000-0000000-0000					
일시	년 월 일					
검토의견						

년 월 일

위원명 (서명 또는 인)

■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[별지 제4호 서식](제12조제3항 및 제4항 관련)

###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

안건					
접수번호	20230000-0000000-0000				
일시	년 월 일				
심의 결과					

#### < 한국교통안전공단 청원심의회 위원 >

		심의 의견					
구 분	성 명	<b>찬성</b> (심의결과 동의)	<b>반대</b> (심의결과 반대)	비고	서명 또는 인		
위원장							
위원							
위원							
위원							
위원							

년 월 일